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01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박덕흠 · 박상웅 · 김소희
김위상 · 이종욱 · 신성범
안상훈 · 서천호 · 김성원
김종양 · 백종현 · 윤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지방행정회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를 “국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방행정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호 중 “동우회”를 각각 “지방행정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동우회”를 각각 “지방행정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행정”을 “국가 및 지방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을 “그 밖에 지방행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사업

제11조제1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지방행정동우회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다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지방행정동우회법</u>	<u>지방행정회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지방행정회</u> ----- <u>국가</u> ----- ----- ----- -----.
제2조(설립) ① <u>지방행정동우회</u> (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u>지방행정회</u> ----- ----- -----.
② <u>동우회</u> 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u>지방행정회</u> ----- ----- -----.
③ <u>동우회</u>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u>지방행정회</u> ----- ----- ----- -----.
제3조(정관) <u>동우회</u>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정관) <u>지방행정회</u>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u>동우회</u> 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 <u>지방행정회</u> ----- -----
제4조(회원의 자격) ① (생략)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
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
다.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 지회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군청·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illegible]

③ _____

_____ 지방행

정회 _____

_____.

제5조(조직 등) ① 지방행정회--
-----.

② 지방행정회-----

③ 지 방 행 정 회-----
-----.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이사회) ①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 ⑥ (생략)

제12조(임원) ①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④ (생략)

제6조(사업) 지방행정회-----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및 지방행정-----

3.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사업
4. 그 밖에 지방행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삭 제>

<삭 제>

제11조(이사회) ① 지방행정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원) ① 지방행정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행정회-----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u>동우회</u>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u>동우회</u>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사무 부서) ① <u>동우회</u>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재정) ① <u>동우회</u>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제6조제2호 및 제3호</u>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u>지방행정회</u>----- -----. ⑥ ----<u>지방행정회</u>----- -----. 제13조(사무 부서) ① <u>지방행정회</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정) ① <u>지방행정회</u>---- ----- -----. ② -----<u>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u>----- ----- ----- -----.
---	---